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부시책 추진 인력과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 한시정원(3급)의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06명 → 3,282명(+76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41명 → 1,556명(+15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552명 → 1,613명(+61명)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14명(2~3급 +1명, 5급이하 +13명)
 - 연구직 : 연구사 +1명
 - 소방직 : +61명(소방령이하 +61명)

○ 한시정원(3급) 기한연장

- 2015년 6월 30일 → 2016년 6월 30일 (1년)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과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3급)의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556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13명으로 61명 증원하는 등 전체 정원의 총수를 3,206명에서 3,282명으로 76명 증원하며,

직급·직종별 정원에서 일반직 14명, 연구사 1명, 소방직 6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인 3급 1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신설과 혁신도시관리본부의 기한연장에 따라 정원을 증원 및 연장하고, 소방현장 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